

병합심리신청

피고인 ○ ○

생년월일 19○○. ○. ○○.

주 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

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〇〇고단 〇〇〇호 사기 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〇〇지방법원 20〇〇고단 〇〇〇호 절도 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, 피고인은 연고가 전혀 없는 〇〇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등 공판기일에의 출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조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귀원에서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토지관할의 경우)

2000. 0. 0.

위 피고인 ○ ○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귀중

				V N 대한법률구조공단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관 런 법 규	형사소송법 300조	www.kiac.
신 청 인	법원(직권)검사· 피고인 또는 변호인	제출부수	신청서 1부	
불복절차 및 기간	(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을 하고,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 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)			